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88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정태호·임광현·이수진

송옥주 • 이학영 • 손명수

한병도 · 김기표 · 서영교

강준현 • 이연희 • 최기상

김영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 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기획성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법리다툼이 치열한 소송사건 대응에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 개정 및 제8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1항 단서 중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또는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 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장 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 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 또는 제1호 내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 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아니한다.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국세의 부과 · 징수 · 송무 등 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 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자</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